

의안번호	2205635
의 퇴 인	이만희의원
회 답 일	2024. 12. 17.
추 계 번호	24B5145
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제한 식물 등 금지품등의 유통금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, 추가재정 소요는 2026년 75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,750만원(연평균 75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포상금(안 제43제1항제3호의2 신설) - 금지품등의 유통 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신고·고발 등	7.5	7.5	7.5	7.5	7.5	37.5	7.5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3제1항제3호의2 신설 (포상금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식물검역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(제1항) 3의2.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한 금지품등을 취득·양도·운반 또는 보관한 자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43제1항제3호의2 신설(포상금)	○	•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자료 참고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포상금—금지품등의 유통 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신고·고발 등(안 제43제1항제3호의2 신설)

- 개정안은 수입제한 식물, 검역 미수검 식물검역대상물품, 격리재배 검역 미 실시 식물 등 금지품등의 취득·양도·운반 또는 보관을 금지하면서(안 제13조의2¹⁾ 신설), 이를 위반한 자를 신고·고발하는 경우 신고포상

1) 안 제13조의2(금지품등의 유통 금지 등)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등(이하 “금지품등”이라 한다)을 취득·양도·운반 또는 보관하지 못한다.

1.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. 다만,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위험분석을 마친 금지품은 제외한다.
 2.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제한된 식물등
 3. 제12조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
 4.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목재포장재
 5. 제13조제1항에 따라 격리재배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
-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품등을 취득·양도·운반 또는 보관한 자에게 폐기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- 본 추계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(이하 “검역본부”라 함)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

□ 금지품등의 신고 건수 및 포상금 지급 단가는 다음과 같이 가정

- (금지품등 신고 건수) 연간 25건으로 가정 (검역본부 제출자료)
 - 최근 3년간 신고(전화, 국민신문고 등)를 통해 금지품 등으로 폐기 처분된 건수는 연평균 10건 수준
 - ※ 금지품등 신고 건수: ('21) 8건 → ('22) 9건 → ('23) 13건
 - 검역본부에 따르면 향후 금지품등에 대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, 신고건수가 2~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, 현행 2.5배 수준으로 가정
 - ※ 이때 추계기간 동안 신고 건수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- (포상금 지급 단가) 1건당 30만원으로 가정 (검역본부 제출자료)
 - 범칙물품은 통상 건당 50kg 내외이며, 도매가격으로 환산하여 사건금액이 10~50만원 미만
 - 현행 「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」(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2023-17호, 2023. 5. 30., 일부개정)
 - 에 따르면 포상금 금액 30만원 해당²⁾
 - ※ 이때 추계기간 동안 포상금 지급 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2) 「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」 [시행 2023. 5. 30.] [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 2023-17호, 2023. 5. 30., 일부개정]

[별 표]

사건금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(제4조제1항관련)

1. 식물방역법 위반사범 사건금액	포상금액 (만원)
① 10~50만원 미만	30
② 50만원 ~ 100만원 미만	50
③ 100만원 ~ 500만원 미만	70
④ 500만원 ~ 1000만원 미만	100
⑤ 1,000만원 ~ 5,000만원 미만	150
⑥ 5,000만원 이상	200
2. 병해충의 종류	
① 관리병해충	30
② 금지병해충	70
주1) 동일한 병해충의 신고가 제한된 지역에서 다수 접수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.	
주2) 불상사건의 경우 포상금액의 50% 이내에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되,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	

- 추계결과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제한 식물 등 금지품등의 유통금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,75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유통금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신고 건수 (A, 건)	25	25	25	25	25	—
포상금 지급 단가 (B, 백만원/건)	0.3	0.3	0.3	0.3	0.3	—
추가재정소요 (C=A×B, 백만원)	7.5	7.5	7.5	7.5	7.5	37.5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이주호	배아형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주호	02-6788-3746	progress@nabo.go.kr